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대학의 7,8구간 학생 이자 면제 근거 신설〉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07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1.
3. 회부연월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 기업, 의료 및 문화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

③・④ (생 략)	<u>「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u> <u>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u> <u>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u> <u>은 제외한다) 대학생이 속한 가구</u> <u>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u> <u>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u> <u>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u> <u>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에 속</u> <u>하는 가구의 사람으로서 교육부장</u> <u>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u> ③・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1.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연이자 1.7%)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졸업 이후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 상환 능력을 갖추었을 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학 기간 중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이수 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이자면제 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은 기

초·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이하인 경우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26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임.

- 면제되는 이자액은 ①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②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로, 동법 제16조의2제2항제6호²⁾에 따라 제1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이하'(6구간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환산소득 793만원)인 경우, 상환기준 소득(3,037만원)을 초과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것임.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5구간 이하)인 경우에 이자 면제를 하였으나, 최근 법률이 개정(26.7.1. 시행예정)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이하(6구간 이하)인 경우 이자면제 대상이 되며, 이자 면제 기간 제한(2년)이 삭제되었음.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26.1.29.)하여 26.7.1. 시행 예정임

<현행 대출원리금 이자면제 대상>

구분	사업 대상	
이자면제 대상	병역 복무자 (제16조의2 제1항)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제16조의2 제2항 제3항을 변경 및 제2항제6호로 이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중 교육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26.5.12. 시행예정)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이하인 채무자 (단, 기간제한 삭제/26.7.1. 시행예정)
	제16조의2 제3항	<삭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 (단,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 동안 이자 면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주: 학자금상환법 개정으로 제16조의2제3항의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제3항이 변경
및 제2항으로 이동하여 제16조의2제2항제6호로 신설됨.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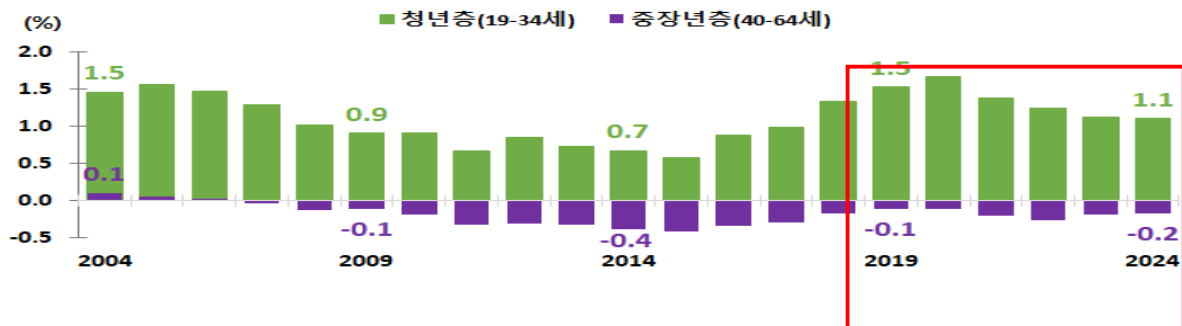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취업 후 상환	군복무자	35,147	1,203	31,033	1,050	26,342	806	10,153	455
	수급자/ 차상위	17,817	459	19,754	583	82,374	1,985	91,425	4,572
	다자녀 가구	58,405	3,022	72,467	4,269	163,886	8,880	170,820	14,491
	기준 중위소득 이하 (5구간 이하)	-	-	-	-	133,011	2,705	157,970	8,046
	취업 후 상환 계	111,391	4,684	123,277	5,902	405,637	14,376	430,393	27,564

자료: 교육부

2. 검토의견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통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20년간 19~34세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지속적인 순유입이 발생하였음. 또한, 2024년 청년층의 수도권 순이동 사유로 직업이 가장 높으며(58,000명), 교육이 두 번째로 높게(18,000명)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로 지방의 청년층 유출 및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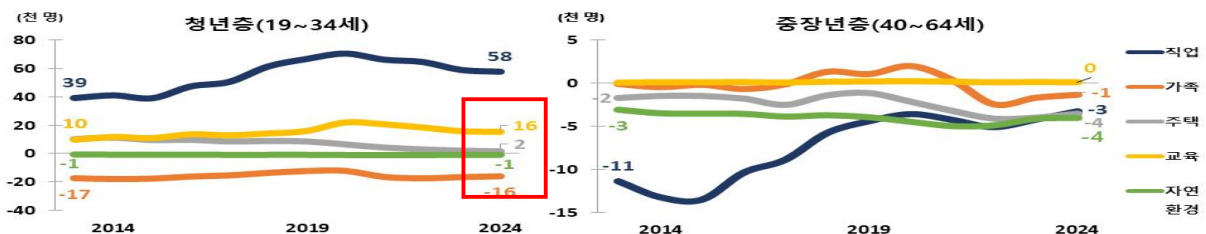
<수도권 청년층과 중장년층 순이동률>



자료: 통계청

주: 순이동률=전입인구-전출인구/지역인구×100(%)

<수도권 1인 이동자의 전입사유별 순이동>



자료: 통계청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대학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하여 지방대학 입학유도를 위한 유인구조의 마련과 정책적 신호 측면에서 그 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구체적인 효과를 보면, 26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이자면제 제도에 의하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이하(6구간, 월 소득인정액 844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대하여 이자감면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소재 대학 학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200이하(7~8구간, 7구간 974만원 이하, 1,299만원 이하)인 경우도 이자를 면제 받게 됨.

<개정안에 따른 이자면제 확대 효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15119/26.7.1.시행예정)		개정안	
	적용인원(6구간)	감면효과	적용인원(7~8구간)	감면효과
수도권	77,896명 (수도권 + 비수도권)	1인당 연간 감면액: 10만 7,000원 (연간 소요액 :약 84억원)	0	0
비수도권			약 61,000여 명	1인당 연간 감면액: 8만원 (연간 소요액 :약 48억원)

자료: 교육부, 재구성

주1: 7,8구간 1인당 감면액=1인당 평균 대출잔액(471만원)×1.7%(대출금리)

6구간 1인당 감면액=1인당 평균 대출잔액(635만원)×1.7%(대출금리)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이자면제를 받게 되는 대상은 약 6만명으로 추계됨. 이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의무상환 미개시자³⁾ 약 9만 5,000명(95,198명)중 다자녀 가구(약 22,000명)와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중복된 인원(약 12,000명)을 제외한 것임.

이들에 대한 이자면제 예산 소요액은 실제 대상 인원과 1인당 감면액을 곱한 금액으로 학기당 24억원, 연간 약 48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구간별-지역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25년 말 대출잔액						
	비수도권						비수도권 비율
	금액			인원			비율
	전체	의무상환 개시	의무상환 미개시	전체	의무상환 개시자	의무상환 미개시자	
기초	293,967	51,977	241,990	53,590	11,135	42,455	62.8%
차상위	244,264	39,908	204,356	52,071	9,714	42,357	55.1%
1구간	616,070	142,568	473,502	141,588	36,907	104,681	56.7%
2구간	546,740	135,303	411,438	143,988	39,320	104,668	57.3%
3구간	432,126	101,422	330,704	121,178	31,348	89,830	57.4%
4구간	390,059	84,389	305,670	103,373	25,094	78,279	57.1%
5구간	212,511	51,800	160,711	61,304	16,230	45,074	57.9%
6구간	361,245	70,714	290,531	90,876	20,276	70,600	58.1%
7구간	237,517	52,721	184,796	61,216	14,911	46,305	56.9%
8구간	267,360	49,874	217,486	61,363	12,470	48,893	55.1%
9구간	106,678	15,941	90,738	19,866	3,218	16,648	51.4%
10구간	68,924	11,816	57,108	10,488	2,086	8,402	45.9%
기타	14,500	3,008	11,492	4,356	934	3,422	53.1%
합계	3,791,961	811,440	2,980,521	574,304	135,374	438,930	56.9%

자료: 교육부

주: 비수도권 비율 = 비수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인원(잔액)/전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인원(잔액)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는 의무상환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면제 제도임.

□ 현재 이자면제 대상의 추세를 보면 학생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현행법을 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취지에서도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짐.

□ 특히, 전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8구간 이하에 속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방대학 학생 수의 비중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전체 학생(수도권+비수도권)수의 55%이상이므로 대출잔액도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수요가 수도권에 비하여 많아 이자 면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 의할 때 지방대학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개인의 소득 등이 기준이 아니라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형평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자면제제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인 만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비율, 즉 월 소득 인정액(4인 가구 기준)⁴⁾ 이 1,299만원 이

4) 월소득인정액=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재산(부동산,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의 소득 환산액

하인 경우에 대해서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지
속가능성,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현황>

구분		제16조의2 제2항				제16조의2	
		1호~4호	5호	6호	7호	제3항	
「취 업 후 학 자 금 상 환 특 별 법」	2021.6.8. 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	-	-	기준 중위 소득 이하 인 자	
	2023.12.26. 개정						
	2025.11.11. 개정		「아동복지 법」에 따 른 자립지 원 대상자	삭제 후 경	제6호로 변 경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인 자
	2026.7.1. 시행예정						
	개정안 (고민정 의원안)						

- 한편, 자구 수정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이 '26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신규 조항의 문구⁵⁾와 자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통일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⁶⁾과 자구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015년 이전 대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15119)